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자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나. 개정사유
 -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기금집행은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를 "이자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내에서"로 개정 (안 제3조 제3항)
 - 기금의 운용 (안 제8조)
 1.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

의안 번호	97-72
----------	-------

제출년월일 : 1997. 5. 28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금집행은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를 "이자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 내에서"로 개정 (안 제3조제3항)
- 기금의 운용 (안 제8조)
 1.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 제2항중 "각호의 1"를 "각호"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를 "이자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8조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 - - - - - - - - .</p>
<p>제2조 (기금의 조성)</p> <p>① (생 략)</p> <p>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순군의 출연금등 2. 노인연합회의 출연금 3.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등 <p>③군수는 제2항 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2조 (기금의 조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③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p> <p>③ - - - 제2항 - - - - - - -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p> <p>① (생 략)</p> <p>②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각호 - - - - - - - - - - .</p>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u>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u></p> <p>제8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에 수반된 비용</u> 2. <u>각급회(지회, 읍면분회, 노인정회) 이 지도육성</u> 3. <u>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u> 4. <u>노인회보 발간</u> 5. <u>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u> 6. <u>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u> 7. <u>노인문제상담소 운영</u> 8. <u>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u> 9. <u>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u> 10. <u>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u>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 - - 이자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내에서 - - - - -</p> <p>제8조(기금의 운용)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u> 2. <u>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u> 3. <u>노인소득사업의 지원</u> 4. <u>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u> 5. <u>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u>